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장의 분장사항에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업무를 추가하고, 체육국 체육정책과장의 분장사항 중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을 체육협력관 스포츠유산과장에게 이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전산)을 복수직화(전산 또는 공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 임기제 공무원 7급 3명을 각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에 증원하는 한편,

외신 분석·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외신분석기획팀을 해외문화홍보원에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기제 공무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기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조정한 31명(5급 13명, 6급 15명, 학예연구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1명(6급 14명, 7급 14명, 학예연구사 3명)의 직급을 2024년 11월 30일을 존속기한으로 하여 새로 상향 조정(5급 14명, 6급 14명, 학예연구관 3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제1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3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흥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5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제35조제2항 중 “외신협력과를”을 “외신협력과 및 외신분석기획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외신분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언론의 한국 관련 취재 등 지원
2. 외국언론인 방한 초청
3. 상주외신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 협력·지원
5.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홍보 역량 강화 지원
6. 외신지원센터 운영
7. 대통령·국무총리의 정상외교 및 국빈방한 행사 홍보 지원

⑧외신분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관련 외신 보도의 수집 및 분석
2. 한국관련 오보·왜곡보도 대응
3. 외신보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외신홍보 기획
4. 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료의 영문 번역 지원
5. 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6. 해외 연구기관 정책자료 분석 및 활용 지원

제46조제1항 단서 중 “9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5명)”을 “12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6명)”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전단 중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1명),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6급”을 “6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81”을 “182”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5”를 “17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3”을 “84”로 한다.

별표 5 사서주사 44 다음에 “공업주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1”를 삭제하며, 전산주사 “8”을 “7”로 하고, 전산주사 7 다음에 “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5의2 중 전산주사 “8”을 “7”로 하고, 전산주사 7 다음에 “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주사보 “3”을 “4”로 한다.

별표 7의2 중 방송무대사무관 “1”을 “2”로 하고, 방송무대주사 “9”를 “7”로 하며, 공업주사보 “3”을 “4”로 하고, 방송무대주사보 “15”를 “1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58”을 각각 “15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55”를 “156”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1년 11월 30일”로,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12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1의2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별표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별표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 별표3의2의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6의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별표7의2의 방송무

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신분석기획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외신분석기획팀장이 해외문화홍보원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외신분석기획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외신협력과장이 보좌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⑮ (생 략) <16>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 9. (생 략) ⑰ (생 략) 제14조(체육국) ① · ② (생 략)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7조제3항제13호부터 제19호까 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 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 좌한다. ④ (생 략) ⑤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u>15의2.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u> <u>· 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u> <u>지원</u>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외국박물관 한국실에 관</u> <u>한 정책 수립 및 조정</u> 6. ~ 9. (현행과 같음) ⑰ (현행과 같음) 제14조(체육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7조제3항제10호의 전통무예 진 흥 및 제13호-----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5. (현행과 같음) <u><삭 제></u>

16. (생 략)

⑥ ~ ⑨ (생 략)

⑩ 스포츠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생 략)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 · 해외문화홍보사업과 ·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관련 외신논조의 분석 · 평가

2. 한국관련 오보 · 왜곡보도 대

16.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8. (현행과 같음)

9.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 · 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 · 지원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외신협력과 및 외신분석기획팀을 -----

----- 기술서기관으로, 외신분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삭 제>

<삭 제>

<u>은</u> 3. (생략) 4. <u>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 집자료의 제작·배포</u> 5. <u>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 료의 영문 번역 지원</u> <u><신설></u> 6.·7. (생략) 8. (생략) <u><신설></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	1. (현행 제3호와 같음) 4. <u>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 홍보 협력·지원</u> 5. <u>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외신 홍보 역량 강화 지원</u> 6. <u>외신지원센터 운영</u> 2.·3.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⑧<u>외신분석기획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1. <u>한국관련 외신 보도의 수집 및 분석</u> 2. <u>한국관련 오보·왜곡보도 대 응</u> 3. <u>외신보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외신홍보 기획</u> 4. <u>정부 주요 발표문 및 보도자 료의 영문 번역 지원</u> 5. <u>외신 관련 데이터베이스시스 템 운영 및 활용</u> 6. <u>해외 연구기관 정책자료 분 석 및 활용 지원</u>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
--	--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행정주사
보 1명), 산업안전관리를 담당
하는 1명(7급 -----

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
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
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⑧ (생 략)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
며,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
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
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
2와 같다.

⑩ ~ ⑮ (생 략)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

⑧ (현행과 같음)

⑨ -----

-----6급
1명),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는
1명(7급 -----
--.

-----.

⑩ ~ ⑮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9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14명(행정사무관 6명, 행정·통신·전산·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 5명, 행정·통신·전산·방송주사 1명, 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1명), 별표 3의2의 3명(행정사무관 1명, 공업·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별표 5의2의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6명, 행정·통신·전산·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 5명, 행정·통신·전산·방송주사보 1명, 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2) -----

----- 2021년 11월 30

일----- 2021년 12월

1 일-----

보 1명, 별표3의2의 행정주사 1명, 공업·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전산주사 1명), 별표 3의2의 4명(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관 3명), 별표 6의2의 1명(행정·시설사무관 1명), 별표 7의2의 1명(방송무대 주사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보 1명, 별표 3의2의 공업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3명, 별표 6의2의 행정·시설주사 1명, 별표 7의2의 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illegible]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 <u>181</u>	· · <u>182</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75</u>	 <u>176</u>	 +1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83</u>	· <u>8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전산주사		<u>8</u>	<u>7</u>		-1
		<u>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산주사			<u>8</u>		<u>7</u>	-1	
<u>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주사보 · ·	· · <u>3</u> · ·	· · <u>4</u> · ·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무대사무관	<u>1</u>	<u>2</u>	+1
·	·	·	
·	·	·	
방송무대주사	<u>9</u>	<u>7</u>	-2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방송무대주사보	<u>15</u>	<u>16</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8</u>	• <u>159</u>	+1
일반직 계	<u>158</u>	<u>159</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5</u>	<u>156</u>	+1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 <u>181</u>	· · <u>182</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175</u>	 <u>176</u>	 +1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 보 · 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u>83</u>	· <u>8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		•	•	
		•		•	•	
		전산주사		<u>8</u>	<u>7</u>	-1
		<u>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전산주사			<u>8</u>		<u>7</u>	-1	
<u>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공업주사보 • •	• • <u>3</u> • •	• • <u>4</u> • •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무대사무관	<u>1</u>	<u>2</u>	+1
·	·	·	
·	·	·	
방송무대주사	<u>9</u>	<u>7</u>	-2
·	·	·	
·	·	·	
공업주사보	<u>3</u>	<u>4</u>	+1
·	·	·	
·	·	·	
방송무대주사보	<u>15</u>	<u>16</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58</u>	• <u>159</u>	+1
일반직 계	<u>158</u>	<u>159</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5</u>	<u>156</u>	+1
•	•	•	